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정보의 공개범위)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개선

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
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(이하 “품질인증식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정보
3.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

제10조 중 “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(이하 “품질인증식품”이라 한다)”을 “품질인증식품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”를 “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”로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매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

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품질인증 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“한 날”을 “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”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

※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업소명(상호)		영업의 종류
	영업등록(신고)번호		대표자 성명
	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 :)
		공장(사업장)	
		(전화번호 :)	
신청내용	제 품명(유형)	인증번호	
	총 내용량	1회 섭취참고량	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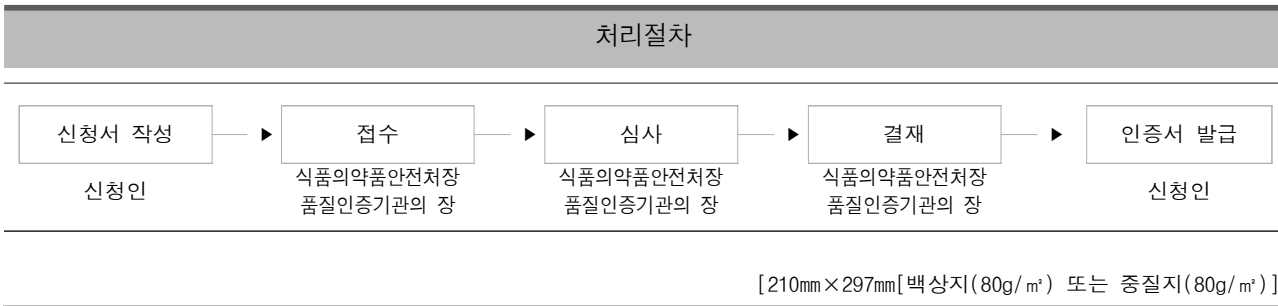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9조의3(정보의 공개범위) 법 제		
		1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식생		
		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		
		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		
		각 호와 같다.		
		1.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		
		에 관한 정보		
		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		
		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		
		(이하 “품질인증식품”이라 한		
		다)에 관한 정보		
		3.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		
		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		
		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		
		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		
제10조(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		제10조(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		
등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		등) 품질인증식품-----		
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		-----		
(이하 “품질인증식품”이라 한		-----		
다)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		-----		
4와 같다.		-----.		
제11조(품질인증 신청 등) ① 법		제11조(품질인증 신청 등) ① ---		
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		-----		
호식품을 제조·가공·수입·		-----		

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“품질인증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4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(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
5. (생략)

[illegible]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----- 제4조제2항에 따른
우수수입업소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3(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매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품질인증 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